

「국고금 취급절차」 주요 개정내용

I 개정 필요성

- 국고금 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국고금 지급보증제도를 정비
 - 現 「국고금 취급절차」에 따르면 은행 이외 금융기관(국고수납대리점)이 수납한 국고금은 당행 앞 지급을 **은행이 보증**하거나 **회원조합 등이 연대보증**하는 반면, 회원조합 등(국고금수납점)이 수납한 국고금은 중앙회 등이 보증토록 규정(제3조제2항제5호, 제3조제4항제3호)
 - 비은행 금융기관이 국고수납대리점으로 지정될 경우 현실반영도를 고려하여 지급보증대상 기관을 정비하는 한편, 국고금수납점(금융투자회사)으로의 지정시에는 보증제공 기관을 확대
 - 한편, 보증채무의 경우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도록 민법이 개정(2015.2월)*되었으나 국고금 관련 규정 및 계약서 상에는 동 내용이 미반영됨에 따라 **채무 최고액을 설정**할 필요
- * 민법 제428조의3 (근보증)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증하는 **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**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.
- 국고전산망 추가연계기관(국고금수납점)에 은행이 추가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운영방식을 반영하여 국고전산망 업무 프로세스 정비
- 국고금 취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국고대리점에 대한 제제기준을 감사실 지적사항을 반영*하여 보완

* 감사실 「일반감사 결과 참고사항 통지」(감사실-868, 2021.5.24)

Ⅱ 주요 개정 내용

① 국고금 지급보증제도 개선

① 국고수납대리점 계약 체결 시 지급보증 대상기관 정비(제3조)

-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 비은행 금융기관*(중앙회)이 수납한 국고금에 대해서는 은행의 지급보증 또는 회원조합 등의 연대보증 의무를 폐지(제3조제2항제5호)

*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, 신용협동조합중앙회,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(6개)

- 현재 상기 중앙회가 수납한 국고금에 대해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 않고 있으며, 중앙회의 경우 결제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
- 한편, 금융투자업자가 수납한 국고금의 한국은행 앞 지급은 은행이 보증하거나 금융투자업자 등이 연대하여 보증하며, 연대보증 제공 시 보증한도는 개별 금융투자업자별로 산정(제3조제2항제5호, 개정안 제6호)

② 국고금수납점(회원조합 등)에 대한 보증제공 기관 확대 등(제3조)

- 회원조합 등*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수납한 국고금에 대해 해당 중앙회가 보증할 수 없을 때에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거나 금융투자업자 등이 연대하여 보증토록 규정(제3조제4항제3호, <별지 제2-1호>)

* 회원조합, 회원금고, 회원저축은행 및 「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」 제9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중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관

- 국고금 지급보증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국고금 회수의 안정성 제고를 도모

- 한편, 금융투자업자 등이 연대하여 보증할 경우 보증한도는 개별 금융투자업자별로 명시(개정안 제3조제4항제5호)

③ 산하 회원조합 등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설정(개정안 제3조제4항제4호)

- 중앙회 등이 산하 회원조합 등이 수납한 국고금에 대해 지급을 보증할 경우 보증한도는 **직전 3개년간** 해당 중앙회 등 및 회원조합 등 전체가 **일별 수납한 국고금중 최고 수납액의 2배로 산정**

④ 외국은행 본점의 국내지점에 대한 보증제도 폐지(제3조제2항제6호, 제3조제5항제4호)

- 외국은행 **본점의 경우 국내지점과 사실상 법인격이 동일**하여 본점의 지점에 대한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데다 국내은행과의 형평성* 등을 고려하여 지급보증제도 폐지

* 지급보증제도의 경우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

⑤ 신규 지급보증 계약 체결 기준 명시(개정안 제3조제7항)

- 당행은 매년 국고금 수납자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금융기관의 보증한도 금액을 산정하며 보증한도 금액이 변경될 경우 계약을 신규로 체결토록 규정

② 국고전산망 업무 프로세스 변경(제2조, 제88조, 제89조, 제102조, 제104조)

- 국고전산망 **추가연계기관(국고금수납점)에 은행이 추가됨**에 따라 계좌입금의뢰자금 지급, 국고금 거래개시, 예비종료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전산시스템 운영방식에 맞춰 변경

③ 금융기관 및 국고대리점 제재기준 정비(<별표 2> 제재기준)

- 국고대리점에 대한 제재사유중 '고의 또는 중과실'에 해당되는 사유에 **사안이 경미한 경우와 사안이 중대한 경우**를 구분하고 있으나 사안이 경미는 경우는 포함할 수 없어 동 구분을 폐지

④ 결제대행은행제도 관련 계약서 개정(<별지 제2-1호>)

- 회원조합이 수납한 국고금은 중앙회가 지정한 **결제대행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결제**토록 변경
 - 은행 이외 금융기관이 수납한 국고금은 **결제대행은행*을 통해서만 회수**토록 규정(제2조 및 제31조)하고 있으나 관련 계약서 상에는 회원조합(회원조합, 회원금고 등)이 수납한 국고금은 당행에 개설된 **중앙회의 당좌예금 계좌를 통해 결제**토록 규정

* 은행 이외 금융기관이 수납한 국고금의 결제를 대행하는 금융기관

⑤ 기타 인용조문 수정 및 용어 정비 등

Ⅲ 시행일

- 시행일: 2023. 2. 9.